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581
----------	------

2026년 4월 21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3월 30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: 2026년 3월 31일

다. 상정일자: 제33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6년 4월 2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미래한강본부장)

가. 제안이유

-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을 준용하여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.

나. 주요골자

-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1항제10호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및 운행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¹⁾(’24.4.9)에 따라 도시공원 등에서 실외이동로봇²⁾의 차도 외의 장소 운행이 금지되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차도 외의 장소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상황임.
- 안 제17조제1항제10호의2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최근 순찰·안내·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외이동로봇의 한강공원 내 운행 및 운행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지원 및 시민 안전 도모 측면에서 이견 없음.

다만, 본 개정안에서는 운행안전인증, 질량, 운행속도 등 기본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는 상위법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바, 운영 방식, 운행구간,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 및 긴급 상황 대응 체계 등 한강공원의 상황을 고려한 세부 관리·운영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1) 제50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5. (생략)

5의2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

나. 실외이동로봇의 질량(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)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

다.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

라. 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

6. ~ 8. (생략)

2)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의2. “실외이동로봇”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(원격제어를 포함한다)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로봇을 말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

나. 실외이동로봇의 질량(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)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

다.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

라. 하천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의2. 「<u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</u>」 제2조제4호의2의 <u>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.</u>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및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2조제8호에 따른 <u>자전거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가. 「<u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</u>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<u>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</u></p> <p>나. <u>실외이동로봇의 질량(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)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</u></p> <p>다. <u>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</u></p> <p>라. <u>하천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</u></p>

할 것

11. ~ 15. (생략)

② (생략)

11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